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178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칙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1]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 관세율표 번호 |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 호 | 소호 | | | |
| 0301 | | 활어 | | |
| 0301 | 9 | 그 밖의 활어 | | |
| 0301 | 92 | 뱀장어[양귀라(<i>Anguilla</i>)속] | | |
| | | 3. 기타 |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가 아닌 것 | 20% |
| 0301 | 99 | 기타 | | |
| | | 1. 돔 | | |
| | | 나. 기타 | |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
| | | 2. 농어 | | |
| | | 나. 기타 | | 28% |
| 0303 |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
| 0303 | 5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속], | |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콸머 스텀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콸머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콸머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콸머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풍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

0303 59

기타

풍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4%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

| | | | | |
|------|----|---|--|-----------------------|
| | | <p>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 | |
| 0306 | 9 | 기타 | | |
| 0306 | 95 | 새우류 |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수성(冷水性) 새우류 [판달러스(<i>Pandalus</i>)속·크란곤 크란곤(<i>Crangon crangon</i>)](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의 새우류(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p>32%</p> <p>32%</p> |
| 0307 | | <p>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 | |

| | | | | |
|------|----|---|-----------------|-----------------------------|
| 0307 | 4 | 갑오징어와 오징어 | | |
| 0307 | 43 | 냉동한 것 | | |
| | | 2. 오징어 | | |
| | | 가. <i>옴마스트레페스</i> (<i>Ommastrephes</i>)속·로리고(<i>Loligo</i>)속·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속·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속 |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 | 22% |
| | | 나. 기타 |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 | 22% |
| 0709 | |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0709 | 5 | 버섯과 송로(松露) | | |
| 0709 | 54 | 표고버섯(<i>Lentinus edodes</i>) | |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
| 0712 |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 0712 | 3 | 버섯, 목이버섯[오리클라리아(<i>Aur</i> | | |

| | | | |
|------|----|--|--------------------------------------|
| | | icularia)속],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송로(松露) | |
| 0712 | 34 | 표고버섯(<i>Lentinus edodes</i>) |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
| 1902 |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902 | 1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902 | 19 | 기타 2. 당면 | 26% 또는 206원/kg 양 자 중 고액(율) |
| 1904 | |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 |

| | | | | |
|------|----|--|--|-----|
| | | [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1904 | 90 | 기타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낱알 모양의 쌀로서 찌거나 삶은 것 | 50% |
| 2103 |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 | |
| 2103 | 90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1. 고추장 | 32% |
| | | | 2.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 45% |
| 4412 |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 | |
| 4412 | 3 | 그 밖의 합판[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4412 | 3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 10% |
| 4412 | 33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i>Alnus</i>)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i>Fraxinus</i>)속]·너도밤나무[과구스(<i>Fagus</i>)속]·자작나무[베틀라(<i>Betula</i>)속]·체리나무[프루누스(<i>Prunus</i>)속]·밤나무[카스타네아(<i>Castanea</i>)속]·느릅나무[울무스(<i>Ulmus</i>)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i>Eucalyptus</i>)속]·히커리[카르야(<i>Carya</i>)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i>Aesculus</i>)속]·라임[틸리아(<i>Tilia</i>)속]·단풍나무[아서(<i>Acer</i>)속]·참나무[코커스(<i>Quercus</i>)속]·버즘나무[플라타너스(<i>Platanus</i>)속]·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i>Populus</i>)속]·아까시나무[로비니아(<i>Robinia</i>)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i>Liriodendron</i>)속]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i>Juglans</i>)속]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10% |
| 4412 | 34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 |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 | 10% |

| | | | | |
|------|----|--|--|-----|
| | | (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상인 것 | |
| 4412 | 3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10% |
| 4412 | 4 | 단판적층재(LVL) | | |
| 4412 | 4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10% |
| 4412 | 4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10% |
| 4412 | 4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10% |
| 4412 | 9 | 기타 | | |
| 4412 | 9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10% |

| | | | | |
|------|----|---|---|-----|
| 4412 | 9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10% |
| 4412 | 9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마루판은 제외한다) | 10% |

[별표 2]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 관세율표 번호 |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 호 | 소호 | | | |
| 0303 |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
| 0303 | 6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 0303 | 67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 | 22% |
| 0303 | 69 | 기타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 22% |

[별표 3]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 관세율표 번호 |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 호 | 소호 | | | |
| 2710 |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 |
| 2710 | 1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 | |
| 2710 | 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 나프타 5. 엔·지·엘(NGL) | | 0.5% 0.5% |
| 2710 | 2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 | | |

| | | | |
|--|--|--|-------------------------|
| | <p>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p> <p>1.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p> <p>라. 나프타</p> <p>마. 엔·지·엘(NGL)</p> | | <p>0.5%</p> <p>0.5%</p>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2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2023년에도 종전과 동일한 세율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되, 냉동명태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프타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머지 12개 물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